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의 장

제25호 2019. 7. 12(금)

조 례

- 남원시 조례 제 1505호 남원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1
- 남원시 조례 제 1506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5
- 남원시 조례 제 1507호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차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2
- 남원시 조례 제 1508호 남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 남원시 조례 제 1509호 남원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 남원시 조례 제 1510호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20
- 남원시 조례 제 1511호 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23
- 남원시 조례 제 1512호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육성 및 가공공장 운영관리조례 -----27
- 남원시 조례 제 1513호 남원시 1지역 1명품 육성 폐지조례 ----- 32
- 남원시 조례 제 1514호 남원시 공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33
- 남원시 조례 제 1515호 남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36
- 남원시 조례 제 1516호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 38
- 남원시 조례 제 1517호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7
- 남원시 조례 제 1518호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9
- 남원시 조례 제 1519호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 ----- 61
- 남원시 조례 제 1520호 남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 102

규 칙

- 남원시 규칙 제 634호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시행규칙 ----- 104
- 남원시 규칙 제 635호 남원시의회 의원 등 공무원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106

훈 령

- 남원시 훈령 제 403호 남원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 117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19-1250호 도로지정공고 ----- 125
- 남원시 공고 제2019-1260호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공청회 개최 공고 ----- 126
- 여수시 공고 제2019-1726호 국(공)유재산 사용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129

회 람										
--------	--	--	--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4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07월 12일

남원시 조례 제 1505 호

남원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
- 2.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사업
-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토론회, 홍보 사업
- 4.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
-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남원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③ 위원은 분야별 전문가, 남원시의회 의원, 시민대표,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원시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장은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07월 12일

남원시 조례 제 1506 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동반 보호자 1명 포함)

제2조(「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따라 등록된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이”을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한다.

제3조(「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의 개정)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은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제4조(「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의 개정)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은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제5조(「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의 개정)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제6조(「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동반 보호자 1명 포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관람료의 면제) ① 시장은 제7조의 단서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다만, 신분증 또는 증명서 등을 매표소에 제시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등급~3등급 장애인(동반보호자 1명 포함)</p> <p>5. ~ 13. (생략)</p> <p>② (생략)</p>	<p>제8조(관람료의 면제) ① ----- ----- ----- ----- -----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동반 보호자 1명 포함)</p> <p>5. ~ 1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제2조(「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정보공개, 지적에 관한 증명은 제외한다.</p>	<p>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 ----- ----- ----- ----- ----- ----- ----- -----</p>

<p>1. ~ 4. (생략)</p> <p>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 등</p> <p>6. ~ 11. (생략)</p> <p>②·③ (생략)</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u>따라 등록된 장애인이</u> ----- ----- -----</p> <p>6. ~ 11.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	--

제3조(「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현행	개정안
<p>제8조(입장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입장료를 면제한다.</p> <p>1. ~ 8. (생략)</p> <p>9. <u>등록장애인 및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u></p> <p>10.·11. (생략)</p> <p>② 삭제</p> <p>③ (생략)</p>	<p>제8조(입장료의 감면) ① -----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명 포함)</p> <p>10.·11.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제4조(「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입장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한다.</p> <p>1. ~ 6. (생략)</p> <p>7. <u>등록장애인 및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u></p> <p>8. ~ 10. (생략)</p>	<p>제8조(입장료 감면) ①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장애인복지법</u>」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명 포함)</p> <p>8. ~ 10. (현행과 같음)</p>

제5조(「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관람료의 감면 등) ① (생략)</p> <p>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p> <p>1.·2. (생략)</p> <p>3. <u>등록장애인 및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사람</u></p>	<p>제8조(관람료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장애인복지법</u>」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명 포함)</p>

제6조(「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입장료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한다.</p> <p>1. 2. (생 략)</p> <p>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3급 장애인(동반 보호자 1명 포함)</p> <p>4. ~ 14. (생 략)</p> <p>② (생 략)</p>	<p>제8조(입장료 면제) ①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동반 보호자 1명 포함)</p> <p>4. ~ 1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07월 12일

남원시 조례 제 1507 호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대학”을 “시설”로 한다.

제9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조 제2항(중전의 제1항) 중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를 “위원회의 회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를 “위원장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u>대학</u>을 말한다. 3. (생 략) <p>제9조(회의) <신 설></p> <p><u>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u>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u></p> <p><u>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안건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u></p>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 ----- <u>시설</u>-----. 3. (현행과 같음) <p>제9조(회의) <u>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u></p> <p><u>② 위원회의 회의는 ----- ----- -----.</u></p> <p><삭 제></p> <p><u>③ 위원장은 ----- ----- ----- -----.</u></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07월 12일

남원시 조례 제1508 호

남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사람을”을 “국민건강보험료의 월별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인 세대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노인세대”란 전 세대원이”를 ““노인세대”란”으로, “남원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을 “구성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시에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대상은”을 “지원대상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생계곤란 세대 중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

제9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u>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u></p> <p>3. "<u>노인세대</u>"란 전 세대원이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u>남원시(이하"시"라한다)에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u></p> <p>4. "장애인 세대"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u>시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u></p> <p>6. "<u>소년·소녀가장 세대</u>"란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u>시장이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를 말한다.</u></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 <u>국민건강보험료의 월별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인 세대를 -----.</u></p> <p>3. "<u>노인세대</u>"란 ----- ----- ----- <u>구성된 -----</u> -----.</p> <p>4. ----- ----- <u>장애인</u> ----- -----.</p> <p><삭 제></p>

7. “조손세대”란 18세 이하 손자
녀와 65세 이상 노인만으로만
구성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손
관계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으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세대로 한다.

- 1. ~ 3. (생 략)
- 4. 소년·소녀가장세대
- 5. 조손세대

<신 설>

제9조(지급중지와 환수)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안에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른다

<삭 제>

제3조(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남원시(이하“시”
라 한다)에 주소를 둔 -----
-----.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6. 그 밖에 생계곤란 세대 중
시장이 인정하는 세대

제9조(지급중지와 환수) ① (현행
과 같음)

<삭 제>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07월 12일

남원시 조례 제 1509 호

남원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p> <p><신설></p> <p>1. ~ 6. (생략)</p>	<p>제2조(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u>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u></p> <p>2. ~ 7. (현행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p>
<p>제4조(위원의 임기) <u>위촉직 위원</u>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u>당연직 위원</u>의 임기는 <u>그 직위의 재임기간</u>으로 하며, <u>보궐위원의 임기</u>는 <u>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u>으로 한다.</p>	<p>제4조(위원의 임기) <u>위원회 위원</u> 중 <u>위촉위원의 임기</u>는 2년으로 한다.</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07월 12일

남원시 조례 제 1510 호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 및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남원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 및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시와 계약을 체결한 법인 및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 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보험료 납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보험기관이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라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시장이 보험기관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07월 12일

남원시 조례 제 1511 호

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홍보 및 예우)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

가를 초청하여 예우할 수 있다.

제4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가 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②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입장료 감면기준의 100% 감면을 감면대상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별표5 주차료 감면기준의 100% 감면을 감면대상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 또는 동승한 차량

③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4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④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의 진료비중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⑤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⑥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⑦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육성 및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07월 12일

남원시 조례 제 1512 호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육성 및 가공공장 운영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육성 및 가공공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공장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새로운 상품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고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너뷰티식품”이란 식습관을 개선하고 건강 증진을 통해 피부를 좋아지
게 하는 기능성 농산물 가공식품을 말한다.
2.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이란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건립한
가공공장의 부지·가공기계·부대시설·운반구 등의 장비를 포함한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제2장 이너뷰티식품 육성

제3조(이너뷰티식품 산업육성)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너뷰티식품 사업자 또는 이너뷰티식품 창업 예정자의 창업과 이전을 촉진하고 경영·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이너뷰티식품 창업 및 이전에 관련된 정보 제공과 상담
2. 이너뷰티 식품 홍보·유통·판매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개최 지원
3. 이너뷰티식품 육성에 필요한 경영효율, 기술개발 및 창업 촉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이너뷰티식품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이너뷰티식품 산업의 신기술 연구와 산업화 등에 필요한 경우
2. 이너뷰티식품 산업의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3. 시설 현대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전문 인력양성) ① 시장은 이너뷰티식품 육성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양성을 위하여 이너뷰티식품 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 등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3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이너뷰티식품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이너뷰티식품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이너뷰티식품 육성을 위한 계획과 평가,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2.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너뷰티식품 산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농·식품 분야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이너뷰티 식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이너뷰티식품 사업체 대표
2. 식품산업 관련 전문가·대학교수
3. 그 밖에 관련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

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이너뷰티식품 업무 담당으로 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 운영 및 관리

제13조(위치)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이하 “가공공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남원시 주천면 용담리 265-3번지에 둔다.

제14조(취급품목) 가공공장에서 사용되는 원료는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산물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 운영) 시장은 가공공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 사용료는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제17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고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1지역 1명품 육성 폐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07월 12일

남원시 조례 제 1513 호

남원시 1지역 1명품 육성 폐지조례

남원시 1지역 1명품 육성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07월 12일

남원시 조례 제 1514 호

남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 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귀뚜라미,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곤충산업의 육성 세부 실천계획)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2.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① 시장은 관상용·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 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상품화 기술개발) 시장은 곤충의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용·학습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
2. 식용·약용·사료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작물보호를 위한 토착 천적곤충 사육지원 등

제9조(자문위원) ①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곤충산업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학교수 및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곤충산업 기반확대, 용도별 곤충자원 연구와 사육기술, 상품개발 등 곤충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제4항에 의한 자문에 응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07월 12일

남원시 조례 제 1515 호

남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
-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07월 12일

남원시 조례 제 1516 호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
3.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 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서류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4.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법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제1호 중 “보완한다.”를 “보완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한다.”를 각각 “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배치한다.”를 “배치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구성 한다.”를 “구성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침입범죄를 예방하여 침입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도록 할 것

제5조 중 “도시디자인 추진”을 “도시디자인 및 방법시설 설치 기준 등”으로 한다.

제6조 제4호 중 “범죄예방을 위한”을 “범죄예방”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방법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제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건축법」 등 관련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방법시설 설치 기준 등) ① 시장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따른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입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제1항에 따른 침입범죄 위험성 등을 평가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방법시설의 설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의 신청을 받아 방법시설의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설치를 지원하는 방법시설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른다.

제9조 제1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방법시설 등 침입예방 설치 사업에 관한 사항

제9조 제2항 전단 중 ““남원시 경관위원회””를 “남원시 경관위원회”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홈페이지”를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u>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u>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u> 2. “침입범죄”란 <u>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u> 3.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란 <u>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서류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u> 4. “방범시설”이란 <u>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u>

제3조(기본방향)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시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 한다.

<신 설>

제5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

제3조(기본방향) -----

-----.

1. -----

----- 보완할 것
2. -----

----- 할 것
3. -----

----- 할 것
4. -----

----- 배치할 것
5. -----

----- 조성할 것
6. 침입범죄를 예방하여 침입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도록 할 것

제5조(시장의 책무) -----

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 1. ~ 3. (생략)
- 4.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사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 5. (생략)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 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

--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설치 기준 등-----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

- 1. ~ 3. (현행과 같음)
- 4. 범죄예방 -----

- 5. (현행과 같음)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
-----.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 사업) ① -----

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신설>

<신설>

-----.

1. ~ 3. (현행과 같음)

4. 방법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건축법」 등 관련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제8조의2(방법시설 설치 기준 등)

① 시장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따른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입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제1항에 따른 침입범죄 위험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방법시설의 설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의 신청을 받아 방법시설의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설치를 지원하는 방법시설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 및 제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원시 경관 조례」에 따른 “남원시 경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생략)

②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5조에 따른다.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방범시설 등 침입예방 설치 사업에 관한 사항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남원시 경관위원회-----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인터넷 홈페이지 -----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p><u>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07월 12일

남원시 조례 제 1517 호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 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주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부부와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수수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의회 위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07월 12일

남원시 조례 제 1518 호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를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절차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영업 등 영리업무뿐만 아니라 비영리 업무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단서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관리인 등 겸직금지)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남원시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2. 남원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남원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남원시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의계약체결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1. 제5조의1항 및 2항에 따른 검직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2. 제5조의5항에 따른 의장의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한 경우
4. 제7조에 따른 남원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한 경우
5. 제8조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별표를 “별표1”로 하고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영리행위 제한 예외 범위

의원의 직업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의한 농업인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업농업인 규모 미만의 농업 총수입자로 하고, 이 경우 총수입 기준은 통계청 전라북도 논벼 소득분석 자료에 의한다.

[별표 2]

징 계 기 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 등	경고
	○ 겸직 거짓신고 - 미신고, 거짓신고	경고, 공개사과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 등	경고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거짓신고 - 미신고, 거짓신고	경고, 공개사과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별지 제1호 서식]

남원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 거 구 분	지 역 구	
성 명	한 글		비 례 대 표		
	한 자		생년월일		
겸 직 내 용	기관·단체명				
	직 위		기간	~	
	수행업무내역				
	분 야	농수산 <input type="checkbox"/> , 상공업 <input type="checkbox"/> , 건설업 <input type="checkbox"/> , 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 교육 <input type="checkbox"/> , 전문직 <input type="checkbox"/> , 기타 <input type="checkbox"/>			
	영리성 여부	영리 <input type="checkbox"/> , 비영리 <input type="checkbox"/>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input type="checkbox"/> , 보수 미수령 <input type="checkbox"/>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 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의회의원

(인)

남원시의회의장 귀하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 거 구 분	지 역 구	
성 명	한 글			비 례 대 표	
	한 자		생 년 월 일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의회의원

(인)

남원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남원시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				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총 명									
	본인 관련자 명					본인, 직계존·비속 명				
	배우자 관련자 명			유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무		-					
연 번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타	
1										
2										
3										
4										
5										
6										
7										
8										
9										
10										

-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의회의원

(인)

남원시의회의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윤리심사 등) ① <u>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u></p> <p>② <u>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4조(윤리심사 등) ① ----- ----- -----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윤리심사절차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남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u></p>
<p>제5조(검직신고) ① <u>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검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u></p>	<p>제5조(검직신고) ① <u>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u></p>
<p><u><신 설></u></p>	<p>② <u>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의장에게 검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영업 등 영리업무뿐만 아니라 비영리 업무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u></p>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신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의원의 직업이 농업인 경우 예외를 들 수 있으며, 예외범위는 별표와 같다.

<신설>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

----- 별표 1과 --.

제7조(관리인 등 겸직금지)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남원시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 2. 남원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 3. 남원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 ③ 제1항의 관리인이라든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남원시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의계약체결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징계)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 1. 제5조의1항 및 2항에 따른 겸직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 2. 제5조의5항에 따른 의장의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 3. 제6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한 경우
- 4. 제7조에 따른 남원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한 경우
- 5. 제8조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의회 위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07월 12일

남원시 조례 제 1519 호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의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

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나. 남원시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

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나.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다.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일천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9. 최근 2년 이내에 안건심의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10.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②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남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의견 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 1.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 2.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해야 한다.

제6조(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2. 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의회, 남원시의 집행기관 및 남원시의 산하기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7조의2(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남원시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남원시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포상·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남원시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 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대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3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는 의원이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③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개별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적합한 세부 제한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

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2. 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남원시 또는 남원시의 산하기관에 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남원시 또는 남원시의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7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9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18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④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⑥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⑦ 의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⑧ 의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0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제19조제6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계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전심의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① 의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출신수범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4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2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제27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27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서 의회 직속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 2.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 4. 이 조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이 조례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

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남원시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의하여야 하며,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이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남원시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제29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③ 의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 여행, 품위 손상, 기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30조(자문위원회 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10조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한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32조(자문위원회 회의) ① 자문위원회 회의는 의장의 자문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1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의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한 자문의 필요가 있는 등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을 서면에 의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내용 및 자문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3조(의견청취) ①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남원시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4조(의결사항의 통지)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위원의 비밀 유지)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37조(자문료의 지급) 의장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9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조례의 교육·상담 및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40조(교육) ① 의장은 소속 의원에 대하여 이 조례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내지 제1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

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의회, 남원시의 집행기관 및 산하기관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남원시의 산하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라.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9조제1항 관련)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 40만원

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가목에 따른 공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다) :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별지 제1호 서식] (제4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	-----	--

신고인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관련 직무	(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	--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2호 서식] (제4조제4항 관련)

의견서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대상업무	
의견	

본인은 위 대상업무와 관련한 본회의(또는 ○○상임위원회) 의결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지 제3호 서식] (제4조제5항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현황

접수번호		접수일
해당 의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관련 사항	<p>관련 직무(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p> <p>※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p> <p>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 관계사업자, 7. 기타)</p>	
안건심의등 회피여부	※ 미회피 시 그 사유(소명 내용)를 기재	
본회의(상임위) 의결사항		
해당 의원 의견		
기타 참고사항		

20 년 월 일

확인점검자

(인)

■ [별지 제4호 서식] (제5조제1항 관련)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제1호)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제2호)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 타					
기타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신고자 :					(인)

[별지 제5호 서식] (제17조제4항 관련)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6호 서식] (제18조제1항 관련)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청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목적	
------	--

활동사유 및 경과	
-----------	--

지원받은 내역 (지원기관별)	
--------------------	--

활동기간 ~ (일간)
------	-------------------------

활동지역 (방문기관)	
----------------	--

참가자	소속 위원회	직위	성명	정당	활동경비	
					금액	부담기관
	합계		명		천원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지 제7호 서식] (제18조제2항 관련)

국내외 활동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제 출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성 명	직 위	정 당	소속 위원회
활동의원				

활동개요	활동목적			
	지원기관(단체)		지원받은 내역	
	활동기간		방문지역 및 기관	

주요활동내역 (일정·활동내역별)				
----------------------	--	--	--	--

(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지 제8호서식] (제19조제2항 및 제4항 관련)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input type="checkbox"/>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input type="checkbox"/> 회의
-------------	---

활동 유형	<input type="checkbox"/> 강의, 강연 <input type="checkbox"/>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input type="checkbox"/> 기고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	--

외부강의등 주제	
-------------	--

장 소	
-----	--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	----------------------------------	------	--------------------------------

사례금	총액 _____ 천원 (※ 1회 평균 대가 _____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_____ 천원)		
-----	---	--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 [별지 제9호 서식] (제19조제6항 관련)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직위 (직급)	소속위원회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input type="checkbox"/>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input type="checkbox"/> 회의	
활동 유형	<input type="checkbox"/> 강의, 강연 <input type="checkbox"/> 기고 <input type="checkbox"/>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input type="checkbox"/> 기타()	
요청자	기관명 담당부서 (담당자)	대표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_____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 천원 별도)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_____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_____ 반환금액 : _____ 반환방법 : _____ ※증빙서류 첨부	
신고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 [별지 제11호 서식] (제21조 관련)

영리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 명		선거구분	지 역 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행위 현 황	명 칭				
	직 위			영리행위 기간	
	보 수	(택) 연 월	원 원	전화번호	
	영리행위 장소 (주소)				
기 타					

(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0호서식] (제19조제7항, 제26조제3항 관련)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청구금액	
------	--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	--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지 제12호 서식] (제2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관련)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	----	-------	-----

신 고 사 항

금전 차용

금전 대부

거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물품 계약

용역 계약

공사 계약

거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지방의회 의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계약체결일	
	거래원인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대상	거래 금액	
거래원인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 [별지 제13호 서식] (제25조제1항 관련)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	------	------	------	-----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연락처	
	소속위원회 (정당)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부동의
---	---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	-----------	--	--

비고			
----	--	--	--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자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지 제14호 서식] (제26조제1항 관련)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소속위원회(정당)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5호 서식] (제26조제5항 본문 관련)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인도자 소속 : _____ 성명 : _____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_____ 성명 : _____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지 제16호 서식] (제26조제5항제3호 관련)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지 제17호 서식] (제26조제6항 관련)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 번호	신고 접수 번호	신고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 일/인 도경 위	관리 부서 (관리자)	보관 장소	처리 내용	처리 일	의장 확인
						소속	정당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07월 12일

남원시 조례 제 1520 호

남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

남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1항 중 “50만원 이상 사용”을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집행대
상자의 수, 집행유형”을 “집행유형”으로 한다.

제7조 중 “매분기별”을 “매월”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공개대상 및 내용) ① 정보 공개 대상은 남원시의회 의원 등이 <u>50만원 이상</u> 사용한 업무 추진비로 한다.</p> <p>② 공개내용은 집행일자(건별구분), 집행목적, <u>집행대상자의 수</u>, <u>집행유형</u>, 집행금액으로 한다.</p>	<p>제5조(공개대상 및 내용) ① ----- ----- --- <u>사용</u>----- -----.</p> <p>② ----- ----- <u>집행유형</u>----- ----- --.</p>
<p>제7조(공개시기 및 방법)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u>매분기별 1회</u> 남원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p>	<p>제7조(공개시기 및 방법) ----- ----- <u>매월</u> ----- ----- -----.</p>

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친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시행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07월 12일

남원시 규칙 제 634 호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보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보험에 가입하여 보상하는 각종 사고 및 재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2.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후유장해
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후유장해
4. 강도 상해 사망, 후유장해
5. 익사 사망
6. 만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7.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후유장해

제3조(계약사항 공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기관 명칭과 보상범위 및 보상 한도액을 남원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남원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제4조(보험금 지급사항 통보) 보험기관은 조례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시장에게 담보내용, 수령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 보험금 지급내역을 다음 달 15일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남원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07월 12일

남원시 규칙 제 635 호

남원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

남원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의원 외의 사람이 남원시의회 예산으로 공무국외출장 하는 경우
7. 그 밖에 남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남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 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④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⑥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심사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임기는 상임위원회 임기와 같다.

제7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남원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

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1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남원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1호 내지 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임기는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5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내용							
출장기간	.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2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 I.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
- II.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 III.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 IV.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

총면수

○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2) 속표지 예시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3. 첨부자료

-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남원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9년 07월 12일

남원시 훈령 제 403 호

남원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남원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총무과장, 홍보전산과장, 민원과장, 도시과장”을 “민원과장”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 중 “시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 후단 중 “시장”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총무국장, <u>총무과장, 홍보전산과장, 민원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상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u>으로 구성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 <u>민원과장</u>----- ----- ----- ----- -----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4조(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u>시장</u>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14조(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중앙행정기관의 장</u>----- -----.</p>
<p>제20조(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요건) ① 비공개 공간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 목적·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u>시장</u>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생략)</p>	<p>제20조(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요건) ① ----- ----- ----- ----- ----- -----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u>-----.</p> <p>② (현행과 같음)</p>

남원시 자치법규 공포목록

□ 총 19건(조례 16건, 규칙 2건, 훈령 1건)

공포 번호	의 안 명	주 요 내 용	비 고
조례 1505	남원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추진계획수립 및 사업 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1조~제5조) 나.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6조~제13조)	
1506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 립김병중미술관 관 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3급 장애인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으로 변경 (제1조, 제6조)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사람” 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으로 변경 (제2조) 다. “등록장애인 및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 의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 반보호자 1명 포함)” 으로 변경 (제3조~제5조)	
1507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가. 고등교육기관에 관한 정의를 개정 (제2조) 나. 위원회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개정 (제9조)	
1508	남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	가. 저소득주민 정의 및 지원 대상을 개정 (제2조, 제3조) - “1만원 미만인 사람” →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로 개정 나. 상위법령 위임 없이 체납 처분 하는 규정을 삭제 (제9조제2항)	

공포 번호	의 안 명	주 요 내 용	비고
1509	남원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	가.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개정 (제2조) 나. 아동복지 심의위원 중 위촉직 위원 임기를 개정 (제4조)	
1510	남원시 시민안전보 험 운영 조례	가. 목적, 정의, 가입대상을 규정 (제1조~제3조) -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료 납입, 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에 관한 사항 (제4조~ 제6조) 다.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보험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7조~제9조)	
1511	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1조~제2조) 나. 병역명문가 홍보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3조) 다. 병역명문가의 예우대상자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4조)	
1512	남원시 이너뷰티식 품 육성 및 가공공 장 운영 관리 조례	가. 목적 및 정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 (제1조~제2조) 나. 이너뷰티식품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3조~제5조) 다. 이너뷰티식품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 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6조~제12조) 라. 취급품목, 위탁운영,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12조~제15조)	
1513	남원시 1지역 1명품 육성 조례 폐지조례	가. 「남원시 1지역 1명품 육성 조례」 폐지	
1514	남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1조~제2조) 나. 곤충산업의 육성 세부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4조)	

공포 번호	의 안 명	주 요 내 용	비고
		<p>다. 전문인력 양성 및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5조~제6조)</p> <p>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7조)</p> <p>마. 상품화 기술개발 및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8조~제9조)</p>	
1515	남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p>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1조~제2조)</p> <p>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4조)</p> <p>다.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5조)</p> <p>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6조)</p>	
1516	남원시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p>가. 정의를 개정 (제2조)</p> <p>- 침입범죄,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 방범시설의 정의 규정을 신설</p> <p>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중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신설 (제8조)</p> <p>다. 방범시설 설치기준 신설 (제8조의2)</p>	
1517	남원시 보건소 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p>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 (제7조)</p> <p>- 60세 이상 주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부부와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수수료</p>	
1518	남원시의회의회 의원 윤	가. 겸직신고 강화 및 내용 명확화 (제5조)	

공포 번호	의 안 명	주 요 내 용	비 고
	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업무, 자영업 등 겸직신고 대상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 - 겸직신고서 및 겸직사실 없음 내역원 등 신고양식 보완 <p>나. 공공단체 관련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규정 신설 (제7조)</p> <p>다. 수의계약체결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 신설 (제8조)</p> <p>라.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수단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직규정 위반 시 사임권고권 시행 (제5조제5항, 제7조제4항) - 겸직신고 위반 및 영리거래 금지 위반 등 비위유형에 따른 구체적 징계 기준 마련 (제9조) 	
1519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	<p>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제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 본인 및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 의장 및 상임위원장에게 서면 신고 후 안전심의 등 관련 활동 회피 <p>나.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5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임기 개시 전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 등의 민간분야 활동 내역을 의장 등에게 제출 <p>다.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규정 (제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금지, 의장은 해당의원에게 관련 행위 중지 및 종료를 권고 <p>라. 가족 채용 제한 규정 (제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은 의회, 남원시의 집행기관 및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공포 번호	의 안 명	주 요 내 용	비 고
		마. 알선·청탁 등의 금지 규정 (제12조) - 의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의 행위 금지 바.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규정 (제15조) - 의원은 직무권한 및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 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 요구 및 약속 금지 사. 교육 실시 규정 (제40조) - 행동강령 조례의 준수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1520	남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가.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사항을 개정 - 업무추진비 공개 범위 (건당 50만원 이상 공개) 삭제 (제5조제1항) - 공개내용 중 집행대상자의 수 삭제 (제5조제2항) 나. 업무추진비 공개시기 개정 - 매분기별 1회에서 매월 1회로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 (제7조)	
규칙 634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가. 목적, 담보내용, 계약사항 공고, 보험금 지급사항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1조~제4조)	
635	남원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	가. 규칙 제명 변경 - 「남원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남원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으로 변경 - 본문의 ‘공무국외여행’을 모두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 나.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 (제4조) - 심사위원회 정수를 기존 5인에서 7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2/3 이상으로 확대	

공포 번호	의 안 명	주 요 내 용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다. 심사위원회 심사기능 강화 (제7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 -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심사 기준 구체화 - 공무국외 출장 제한사항 규정 - 공무출장계획서를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로 변경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분의 예외사항에 해당하 지 않는 경우 추가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못 하 도록 규정 <p>라. 정보공개 확대 (제1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 국외출장계획서를 공개하도록 규정 <p>마. 사후관리 강화 (제11조 및 제1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원이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 하도록 규정 - 공무국외출장 후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 	
훈령 (403)	남원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 개정규정	<p>가. 공간정보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 (제7조)</p> <p>나. 공간정보 국외반출 승인권자 개정 (제14조)</p> <p>다. 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에 관한 승인권 자 개정 (제20조)</p>	

◎ 남원시 공고 제 2019 - 1250호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7월 05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정 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이해관계인		
							지 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2019-1 1	운봉읍 주촌리 499(잡), 499-1(잡), 500(목), 500-1(잡), 648(목)	최*권	2019-건축과- 증축신고-78	109	4.0	533	남원시 운봉읍 주촌리 495-10(전) , 497-1(답) , 505(전)	533	최*권

남원시 공고 제2019 - 1260호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공청회 개최 공고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하여 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19. 07. 10.

남 원 시 장

1. 공청회의 개최목적

- 남원시 원도심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하여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 등 의견수렴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9. 07. 25(목) 16:00 ~ 17:00
- 장 소 : 동충동사무소(남원시 향단로 86)

3.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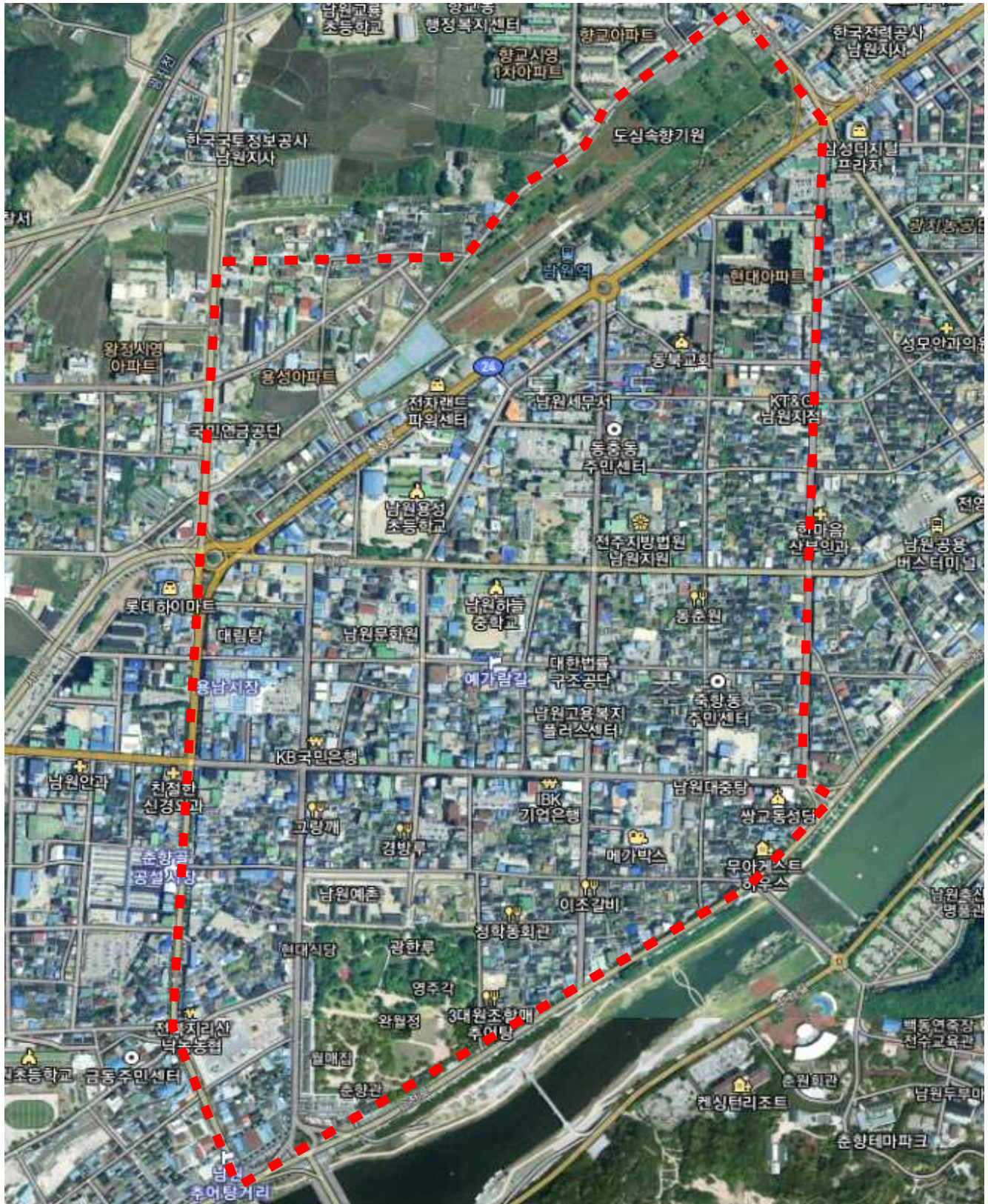
- 사업위치 : 남원시 동충·죽향·금동 일원(원도심 지역)
- 사업면적 : 1.12km²
- 사업기간 : 2016년 ~2020년(5개년)
- 사업목적 :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4. 기타사항

-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과 관련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발표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기한 : 2019. 08. 01.(목)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남원시청 도시과 도시재생담당
 - 우편 및 방문제출 :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남원시청)
 - 이 메 일 : totil8301@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 치 도



[붙임 2]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서

--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 . .

의 견 제 출 자	성 명			
	주 소			
	소속/직업		연 락 처 (휴대전화)	

여수시 공고 제2019 - 1726호

국(공)유재산 사용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부과한 2018년도 국(공)유재산 사용료 미납자에 대하여 체납 고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7. 11.

여 수 시 장

1. 제 목 : 2019년도 국(공)유재산 사용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국유재산법』 제7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3. 대 상 자 : 김*성 등 23명(별도첨부)
4. 공고기간 : 2019. 7.12. ~ 2019. 7. 29(18일간)
5. 공고내용

- 2019년도 국(공)유재산 사용료 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 여수시 도로시설관리과 도로관리팀(☎ 061-659-5108)

2019년도 국(공)유재산 사용료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회계연도	과목코드	납부자명	주소지	부과일자	반송사유	비고
1	2019	41-211036	김*자	여수시 여서로 188, 703동 120*호(여서동 부영아파트)	2019.6.22	보관기일 경과	
2	2019	41-211036	백*자	여수시 동문로 25-*(관문동)	2019.6.22	보관기일 경과	
3	2019	41-211036	김*채	여수시 자산3길 45-*(수정동)	2019.6.22	보관기일 경과	
4	2019	41-211036	김*순	여수시 관문1길 52-*(종화동)	2019.6.22	보관기일 경과	
5	2019	41-211036	강*순	여수시 관문1길 4*(종화동)	2019.6.22	보관기일 경과	
6	2019	41-211036	강*길	여수시 광무남1길 2*(광무동)	2019.6.22	보관기일 경과	
7	2019	41-211036	조*열	여수시 삼암3길 3*(삼암동)	2019.6.22	보관기일 경과	
8	2019	41-211036	천*식	여수시 삼암3길 28-*(삼암동)	2019.6.22	보관기일 경과	2건
9	2019	41-211036	미*직	여수시 소호5길 39, 308동 50*호(소호동, 주은금호아파트)	2019.6.22	보관기일 경과	
10	2019	41-211036	미*철	여수시 소호10길 4*(소호동)	2019.6.22	보관기일 경과	
11	2019	41-211036	김*조	여수시 소호10길 33-*(소호동)	2019.6.22	보관기일 경과	
12	2019	41-211036	조*자	여수시 소라면 서부로 72-*	2019.6.22	보관기일 경과	
13	2019	41-211036	차*원	여수시 신월5길 22, 102동 10*호(신월동, 금성휴먼터치)	2019.6.22	수취인 불명	
14	2019	41-211036	윤*엽	여수시 해산2길 1*(해산동)	2019.6.22	보관기일 경과	3건
15	2019	41-211036	김*성	여수시 주삼길 20-*(주삼동)	2019.6.22	보관기일 경과	
16	2019	41-202009	김*수	여수시 여서로 134, 110동 80*호(여서동, 현대건설아파트)	2019.6.22	보관기일 경과	
17	2019	41-202009	미*훈	여수시 웅천중앙로 47, 306동 140*호(웅천동, 신영웅천지빌3차아파트)	2019.6.22	보관기일 경과	
18	2019	41-202009	박*녀	여수시 박람회길 61, 116동 120*호(덕흥동, 엑스포힐스테이트 1단지)	2019.6.22	보관기일 경과	
19	2019	41-202009	(주)특수엔지니어링	여수시 버드나무길 26-*(봉강동)	2019.6.22	이사감	
20	2019	41-202009	(주)케이칼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5*, (신대방동, 롯데타워)	2019.6.22	이사감	
21	2019	41-202009	김*경	여수시 박람회길 61, 105동 80*(덕흥동, 엑스포힐스테이트1단지)	2019.6.22	보관기일 경과	
22	2019	41-202009	김*진	여수시 화양면 장수로 37*	2019.6.22	보관기일 경과	
23	2019	41-202009	김*운	여수시 봉계2길 6*(봉계동)	2019.6.22	보관기일 경과	